

「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8월 27일

나. 발 의 자: 이정희, 김근한, 김낙관, 김원섭, 김재우,
박세채, 추은희 의원(7인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9월 5일

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이 정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최근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
-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-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8조)
-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제12조)
- 우수사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 ~ 제1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12조
 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25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지구온난화 등 재앙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, 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환경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-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과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지원을 강화하고,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학교, 환경교육센터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운용 등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환경교육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,
- 추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환경교육 업무의 위탁 시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, 프로그램의 다양화, 시설 개선 등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